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3년 5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5월 6일

3. 제안 이유

-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·결정해야 하는 경우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함

4. 주요 골자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조문 개정
 -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”을
⇒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”으로 함
- 용자심의위원회 심의 생략
 -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금액 및 용자금액을 결정하던 것을 ⇒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등 수시로 지원·결정해야 하는 자금의 경우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내용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의 문구를 조정하는 조례로

- 본 조례 제2조 3호의 구조개선자원계획의 정의에서도 개정된 법령으로 문구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문구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
-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·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의 판단기준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